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

교 육 부

수 신 자 수신자 참조

(경 유)

제 목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에 따른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

1. 관련

- 가.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(교육부고시) 제22조
나. 국세청 법령해석과-936 (2021.3.18.),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53(2021.3.9.)

2. 실습지원비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문의가 다수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실습지원비의 ?
소득세법?상 처리기준에 대한 소관부처(청)의 법령해석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
시기 바랍니다.

-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53, 2021.3.9.

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
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
「소득세법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
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
3. 위 해석에 따라,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**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
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**을 대학 측에서 실습기관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
다.

※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집행 등 비용처리 관련은 국세청(126)으로 문의

붙임. 법령해석 서면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문서. 끝.

교 육 부 장


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

주무관

홍혜원

행정사무관

박은정

산학협력일 전결 02/07

자리정책과
장

협조자

시행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-832 (2022.02.07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14동 (어진동) / <https://www.moe.go.kr>

전화 044-203-6882 전송 044-203-6731 / hhwon4@korea.kr / 공개